

감사사무처리기준 개정(안)

I. 개정이유

- 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자의 항변권 보장, 재심의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

II. 주요내용

1 감사대상자의 항변권 강화 [제12조]

- 감사대상자의 항변권, 조력권, 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한 조항 신설

현 행	개 정(안)
〈 신 설 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항(항변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확인서 내용을 감사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항변권 보장 · 제2항(경위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항 확인서 내용에 대한 해명 필요시 경위서 제출 가능 · 제3항(조력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시 감사대상 업무 소관부서의 직원,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· 제4항(의견진술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

2 감사심의회 심의사항 중 재심의회 관련내용 삭제 [제17조]

- 이의신청 등의 내용은 재심의회에서 심의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
제17조 제3호 감사심의회 심의사항	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사항	〈삭제〉

3 재심의회 상정 기한 연장 [제24조]

○ 재심의회 상정안건 검토 및 위원구성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

현 행	개 정(안)
이의신청을 접수한 때 7일 이내에 감사심의회에 부의	이의신청을 접수한 때 <u>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</u> 2주 이내에 재심의회에 부의

4 재심의회 위원 및 의결 요건 [제25조]

○ (현행) 감사심의회에서 동일위원이 이의신청 등을 재심의
⇒ (변경) 공정한 심사를 위해 원심(감사심의회)과 위원을 달리하여
재심의회를 구성

구 분	현 행 (감사심의회)	신 설 (재심의회)
위 원	· 감사실장 · 검사역 전원 (3명)	· 감사실장 · 4급이상 검사역 1인 (원 처분요구 관련 감사인 제외) · 지역본부장, 실·부·점·센터장 중 1인 · 타 기관 감사업무 종사자 1인 · 변호사 등 전문가 (필요시)
의 결	· 2인시 전원찬성	〈개최불가〉
	· 3인 이상 시 2/3 이상 찬성	

5 재심의회 운영 관련 기타 사항

- 이의신청 청구사항처리안은 재심의회 결정내용에 따름
(제24조 제2항)

현 행	개 정(안)
감사심의회 결정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청구사항처리안을 작성	재심의회 결정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청구사항처리안을 작성

- 이의신청, 재심의 요구시 신청서 양식 신설 (제26조)
- 이의신청, 재심의 요구의 각하 사유 명시 (제27조)
 - 신청인의 자격, 신청기한, 재판 등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 등

III. 시행일자 : 2019. 0. 0

【붙임】 감사사무처리기준 개정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감사사무처리기준 개정 전 · 후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 1 장 총 칙 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 2 장 감사의 실시 제7조~제1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2조(항변권의 보장 등) ① 감사규정 제 24조에 따라 확인서를 받은 경우 확인서 내용을 감사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해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자는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감사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업무 소관부서의 직원,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감사심의회 및 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, 감사대상자는 의견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
제12조~제13조 -- (기재 생략) --	제13조~제14조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절 감사심의회 운영</p> <p>제14조(기능) 감사결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제15조~제16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17조(심의사항)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처분 2. 외부감사 결과 및 통보사항에 대한 감사처분 3.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사항 4.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<p>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록(별지 제9호 서식)과 양정결과를 기록, 유지 및 관리한다.</p> <p>제18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감사결과의 보고</p> <p>제19조~제20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처분요구사항 등의 시행 및 처리</p> <p>제21조~제23조 -- (기재 생략) --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감사규정 제30조로 이동)</p> <p>제15조~제16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심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삭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절 감사결과의 보고</p> <p>제19조~제20조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절 처분요구사항 등의 시행 및 처리</p> <p>제21조~제23조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이의신청의 처리</p> <p>제24조(이의신청, 재심의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)</p> <p>① 감사실장은 <u>감사규정에 의하여 주의 촉구, 주의(시정포함)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</u> 감사지적사항정리부에 기재하고 <u>7일 이내에 감사심의회에</u> 부의한다.</p> <p>② 감사실장은 제1항 <u>감사심의회</u>의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의신청 청구사항처리안을 작성하여 시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처분요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각안 2. 원처분요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변경안 3. 원처분요구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취소안 <p>③ 감사실장은 재심회의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제2항의 이의신청처리안 또는 직권재심의 처리안을 작성하여 처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절 재심회의의 운영</p> <p>제24조(이의신청, 재심의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)</p> <p>① 감사실장은 <u>감사규정 제31조에 의한 재심의대상을 접수한 때에는</u> 감사지적사항정리부에 기재하고, <u>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재심의회에</u> 부의한다.</p> <p>② 감사실장은 <u>재심회의</u>의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의신청 청구사항처리안을 작성하여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재심회의의 운영) ①<u>감사규정 제31조에 의한 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사실장 (의장을 겸한다) 2. 4급이상 검사역 1인 (원 처분요구 관련 감사인 제외) 3. 지역본부장, 실·부·점·센터장 중 1인 4. 타 기관 감사업무 종사자 1인 5.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(필요시)

현행	개정(안)
<p>< 신설 ></p>	<p>② 재심의회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유효하며,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< 신설 ></p>	<p>제26조(재심의 요구 등) ① 감사규정 제31조 제 1항 및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15호 서식 “이의(재심의)신청서”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7조(재심의 요구 등의 각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요구 (이하 “재심의 요구 등”이라 한다)를 각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심의 요구 등의 대상이 아닌 경우 2. 재심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3. 재심의 요구 등의 기한이 지난 경우 4. 재심의 요구 등에 따라 이미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5.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6. 법령,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<p>② 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요구 등을 한 것으로 본다.</p>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4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0월00일부터 시행한다.</p>										
<p>별지 제1호 서식 ~ 별지 제14 서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>별지 제15호 서식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의 (재 심 의) 신 청 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5 996 1449 1736"> <tr> <td data-bbox="815 996 1086 1041">1. 처분요구문서 접수일자</td> <td data-bbox="1086 996 1449 1041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15 1041 1086 1086">2.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</td> <td data-bbox="1086 1041 1449 1086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15 1086 1086 1198">3. 이의(재심의)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내용</td> <td data-bbox="1086 1086 1449 1198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15 1198 1086 1458">4. 이의(재심의)신청 사유</td> <td data-bbox="1086 1198 1449 1458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"란"부족시에는 별지 사용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data-bbox="815 1458 1449 1736"> <p>「감사규정」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(재심의)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. . . (인)</p> <p>첨부서류 : 표지포함 매 감 사 실 장 귀 하</p> </td> </tr> </table>	1. 처분요구문서 접수일자		2.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		3. 이의(재심의)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내용		4. 이의(재심의)신청 사유	"란"부족시에는 별지 사용	<p>「감사규정」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(재심의)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. . . (인)</p> <p>첨부서류 : 표지포함 매 감 사 실 장 귀 하</p>	
1. 처분요구문서 접수일자											
2.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											
3. 이의(재심의)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내용											
4. 이의(재심의)신청 사유	"란"부족시에는 별지 사용										
<p>「감사규정」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(재심의)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. . . (인)</p> <p>첨부서류 : 표지포함 매 감 사 실 장 귀 하</p>											